

인도, 태국, 필리핀의 아동노동 현황과 배경요인

최 동 주*

I. 서론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5세에서 14세 사이의 전 세계 아동 중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학교교육 대신 생업을 위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억 2천만 명의 아동이 정규 풀타임 근로자이다(ILO 2000) 거의 모든 국가가 아동노동 규제법령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ILO나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아동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동노동이 장기적으로 해당국가의 인적자원 능력개발의 한계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동노동의 심각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져 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교육 수준과 인프라의 구축 정도,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djchoi@sookmyung.ac.kr

그 유형이나 발생 배경이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인도, 태국, 필리핀의 경우에도 국가간 아동노동의 발생원인과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의 차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비교분석의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노동의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설정한 세 가지 국가 사례를 현황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개별 국가의 활동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노동의 근절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의 시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3장 현황에 근거하여 아동노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 및 노동조건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변수들이 근절방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II. 아동노동의 유형

1. 공식-비공식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아동노동이 아동 개인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자아구현(self-esteem)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대상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 환경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Collins 1983).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노동의 최소연령과 노동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다. 공식-비공식에 의한 분류는 바로 법적인 규제 하

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식 영역의 노동인가, 혹은 법적인 규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영역 노동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림 1〉 15세 이하의 경제활동 아동노동 분포비율, 1999

출처 : Grootaert, Christian and Kanbur, 1995 & ILO, 1996 & ILO, 1999.

아동노동의 조건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Boyden 1991). 예를 들면, 노동시간, 육체적으로 위험한 종류의 노동 등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식적인 아동노동이라 하더라도 공식을 가장하고 이루어지는 아동노동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주된 원인은 바로 고용주들의 착취적 행위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아동노동이 직·간접적으로 다국적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세계 무역과 금융의 개방화 및 자유화가 아동노동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Nike), 월마트(Wal-Mart), 이키아(IKEA) 등의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열악한 아동노동 조건 형성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고용주는 아동들은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고 비교

적 저렴한 임금으로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Bachman 2000).

2. 자발-강제

아동노동 유형 분류의 다른 축은 아동들이 스스로 노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상태에서 노동에 투입되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아동노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Siddigi et al. 2000). 아동이 경험하는 가난은 주로 가족들의 빈곤과 관련이 있는데, 가난에 시달리는 가족들은 아동노동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식들을 노동 현장으로 내보내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아동노동이 모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학교교육 대신에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강제적인 노동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전통적인 노예노동과 유사하게 아동이 노예노동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이는 인도 등 남아시아 등지에서 많이 있는 감금된 형태의 노동인데 주로 농업 영역, 가내 보조, 매춘 사업, 카펫이나 옷감 공장, 벽돌 공장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ILO 2001).

〈표 1〉 아동노동의 유형분류

아동노동의 유형분류		공식 여부	
		공식 영역에서의 노동	비공식 영역에서의 노동
자발여부	자발적 노동	아동유형 I	아동유형 III
	강제적 노동	아동유형 II	아동유형 IV

<표 1>에서와 같이 아동노동의 분류 기준으로써 공식·비공식, 자발·강제를 조합하면 대체로 4가지 형태의 아동노동의 유형이 도출된다. 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 공식적이면서 강제적인 노동, 비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 그리고 비공식적이면서 강제적인 노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유형 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아동노동 유형으로서 법에 정한 노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아동 스스로 선택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세 영역이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될 아동노동의 유형이 된다. 먼저 공식적이면서 강제적 아동노동의 형태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아동노동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노동형태에 해당한다(유형 II). 강제적인 노동의 의미는 가족들의 생계를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교육 대신에 노동을 선택한 경우와 인신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노동을 포함한다. <유형 III>과 같이 비공식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동은 아동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이유에 의한 노동이나 혹은 가정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발적인 아동매춘, 자발적 거리 노동이나 관광산업에서의 노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이면서 비자발적인 노동(유형 IV)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서 인신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노동, 가내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농업·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이며 강제적인 아동노동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Ⅲ. 국가별 현황 비교

1. 인도

1) 아동노동 현황

<그림 2>에서 보듯이 인도의 아동노동 인구분포는 카펫 벨트 지역의 아동 노동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도의 남부 주에 위치하고 있는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카나타카(Karnataka)와 같은 주에 아동노동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동 취학률이 낮은 주이며, 경제적인 침체와 더불어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인도 아동노동의 93퍼센트가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Mishra 2000).

최근 인도의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담보 노동(bonded labor)나 강제노동(child servitude)이다. 담보 노동이란 아동들이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주는 아동들이 가계를 대신한 채무의 양을 계속 늘리면서 아동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노동하도록 하고, 이러한 아동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 보호자들에 의해 고용주에게 팔려가게 된다. 돈을 대부해주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돈을 임차해주고 아동들을 헐값으로 사들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평균 500-7500루피(약 14,000원-220,270원)가량의 빚을 지는데, 이는 아동이 노동하는 산업영역과 기술정도에 따라 달라진다(Human Right Watch 1996). 이러한 담보에 의한 강제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도 아동은 카펫 공장 지역에만도 약 삼십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천 5백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밀나두(Tamil Nadu) 23개 지역에만 백만 명의 담보 아동노동자가 있다(US Dept. of State 1999).

인도 내에서 15세 이하의 아동중의 10퍼센트가 이러한 담보 노동의 희생자이고, 남아와 여아 모두 담보 노동에 팔려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2) 주요 산업별 지역별 담보 아동노동자 수는 <표 2>와 같다.

<그림 2> 인도 주요 주(STATES)의 아동노동 분포

출처 : Konnon, 2001.

<표 2> 인도의 지역별, 산업별 담보아동노동자

지역	산업	담보아동노동자 수	해당 아동노동자 대비
Uttar Pradesh	카펫	15,000명	15퍼센트
Ferozabad	유리	40,000명	80퍼센트
Bobay	매춘	100,000명	17퍼센트
NA	성냥/화약	35,000명	40퍼센트

출처: ILO-IPEC(1999); Saunders(1998)

- 2) 인도에서 담보에 의한 아동노동 대비 강제노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영역은 유리산업이다. 아동들은 유리산업에 동원되어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심한 신체적 악영향을 받고 있다(UN 1996).

2) 법적 규제

아동노동과 관련된 인도의 법률 및 국가정책 중에서 아동노동에 관해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규제를 실시한 것은 1986년에 제정된 「아동노동법」이다. 아동노동법은 인도가 ILO의 규정을 받아들여 아동노동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적용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는 이 법을 통해 아동노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입법안이 아동노동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통일화 작업을 시도했다(National Labour Institute 2000). 아동노동의 규정 적용대상을 14세 이하로 통일하면서 ILO 규정보다 낮은 나이를 설정하였다.

인도 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는 1994년 인도수상의 독립 기념일 연설에서 2백만 명의 아동노동자들을 2000년까지 위험한 노동과정과 직종에서 구제하고 재활시키며, 교육할 것을 선언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96년 인도 대법원의 획기적으로 노조와 주정부가 위험한 직종과 노동과정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을 구별해내고 이들을 그러한 노동으로부터 구제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고용주들은 개별 아동노동자들에게 20,000루피(540,000원)를 지급하도록 하고 주정부는 그 아동의 성인 가족에게 일자리를 구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5000루피(135,000원)씩의 보조금을 주도록 판결하였다. 보조금은 아동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 인도 사회 내에서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주 정부의 헌법 조항 내에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 내어 아동노동 금지와 규제에 관한 법령(1986)과 공장법령(Factories Act), 상점과 상업적 기업에 관한 법령(Shop and Commercial Establishment Act)을 아동노동의 문제와 연계하여 규제하려는 법적 지침들을 모색하게 되었다(National Labour Institute 2000).

3) 국제기구의 역할

아동노동과 관련된 UNICEF의 프로그램은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Programme for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인데,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입법을 실행토록 지지하고 의무 초등 교육제의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UNICEF는 인도의 아동노동의 범위와 정도를 감독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UNICEF는 인도 시민사회 내의 협조적인 네트워크 형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 감독(civil watchdog)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정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주로 아동노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부채를 탕감시키는데 투입되고 있다(UNICEF 2001).

ILO는 IPEC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장 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할 것을 제시하고, 최근 한시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1992년 IPEC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가장 먼저 ILO-IPEC 프로그램을 수행한 국가인데, ILO-IPEC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은 ILO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NGO의 능력을 함양하며, IPEC 프로그램의 실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과 전국 수준의 개입 모델을 구분하며, 아동노동 근절을 수행하기 위한 인도 사회의 인식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동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도의 IPEC 프로그램은 노동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NGO, 국제 운영위원회의 삼각구도 하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감독되고 있다. 또한 인도 ILO-IPEC은 전국 프로그램 조정관(National Program Coordinator)이 있어 인도 노동부와 ILO 본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을 조정 감독하고 있다. 인도 ILO-IPEC 프로그램의 개괄적 내역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인도 ILO-IPEC프로그램의 특성

4) 아동노동 관련 국내의 NGO 활동

Butterflies는 1989년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국내 NGO 중의 하나이다. 본 단체의 활동 취지 및 목적은 집에서 도망 나온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북인도의 힌두어 사용 지역(Hindi Speaking Belt: 방글라데시 등 외국 아동 포함)의 아동권리 보호가 본 단체 활동의 원초적 동기를 제공하였다. Butterflies는 아동권리,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물리적 해결방안을 동시에 추구하고 길거리 아동(street children)에게 교육의 기회와 노동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단체의 중요한 모토는 '민주적 조직'인데, 이는 아동들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적성에 맞는 일과 교육을 지도 계몽하면서 교육과 지식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다.

Butterflies는 기본적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의지와 국제기구의 접근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ILO-IPEC 프로그램의 경우 이 기관에 아동노동의 완전근절을 조건으로 지원을 제안하였으나 본 단체의 거부로 결렬되기도 했다. Butterflies는 ILO의 일반적인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ILO-Convention 182」를 인도 내부에 적용함에 있어 아동노동을 상업적 행위의 범주에서만 해석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동노동의 문제를 철저히 범죄의 차원으로까지 해석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Butterflies는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토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NGO라고 할 수 있다. 인도내의 이러한 형태의 NGO들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r(GMACL)은 Butterflies와는 다른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국제 NGO이다. GMACL은 1980년 정부에 등록된 국제 NGO이다. 본 단체는 아동노동의 완전 근절을 목표로 하여 인력투입, 아동구출 등 직접적인 물리적 해결 방안 및 캠페인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GMACL 활동의 정신적인 기반은 아동을 구제하여 그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며, 아쉬람 캠프(Ashram Camp)에서는 정신교육으로 구제 아동을 아동노동 근절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GMACL은 아동노동에 대한 인도정부의 의지와 국제기구의 접근의 정책현실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정책협력 차원에서 ILO나 UNICEF와는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MACL은 UNESCO나 G8 Summit등의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의 자금을 지원 받고 있고, 네덜란드, 유럽국가와 OXFAM 등 국제 NGO와의 연대성 기금 확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GMACL은 다른 아동노동 관련 NGO들과는 달리 고용주와의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 아동을 구제하는 적극적인 NGO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기반이나 활동의 규모도 다른 NGO들에 비해 대규모이며, 이들의 활동 역시 인도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5) 정부개입

아동노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아동노동 국가 프로젝트」(National Child Labour Project 1987)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은 아동노동에 대한 완전근절을 목표로 구성되었고, 인도정부가 최초로 아동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National Labour Institute 2000). 이 정책은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IPEC)을 인도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개입은 주로 ‘카펫 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76개의 구체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본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노동국은 아동노동자 보호 정책을 주로 전담하여 실행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1992년부터 ILO-IPEC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 소득창출 프로그램(Income Generation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창출 프로그램은 아동노동이 경제적 빈곤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인도 내의 아동노동의 완전근절은 경제적인 부의 창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암시한다. 인도정부의 아동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체 비용의 십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재정은 ILO와 UNICEF를 통해 충당되고 있다.³⁾

3) 이중 UNICEF의 지원은 주로 개별 주에 직접 할당되어 아동노동과 관련된 주정

인도 정부개입의 특성은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역할보다는 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개입의 특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동노동에 대한 합의된 국가전체의 통합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지역적인 환경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노동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주 정부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개별 주 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차이를 조율할 수 없다. 아동노동의 문제가 주로 카펫 산업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거리 노동, 매춘, 가사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에 대한 행정적 조치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의 정부개입은 특정 산업영역 또는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고, 해당 지역 주 정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아동노동 문제해결의 방편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태국

1) 아동노동 현황

ILO 통계에 따르면 태국 전체 아동인구 중 85만-148만 명이 아동노동자이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 농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2-4퍼센트의 6-14세 아동들이 도시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고, 13세-15세 노동자 수는 41만 명에 이르고 있다(ILO 1998a, 1998b; ILO-IPEC 1998a). 태국의 비성년 노동력에서 13-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2.9퍼센트인데 반해, 6-14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이러한 전체 아동노동자

부의 정책에 활용되고 있고, 개별 주 정부가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를 개별주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카펫 벨트지역의 주 정부(Pradesh 지역)는 UNICEF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카펫 산업 규제 및 아동노동자 재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에 대한 개별 연령대 비율을 보면,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아동노동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13-14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영역이 농업(47.7퍼센트)이고 두 번째가 제조업(20퍼센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23만 명의 15-17세 아동노동자들이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1998)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소규모의 기업과, 신발, 보석, 자동차 수리, 주유소, 식당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하고 있다. 산업 분야별 아동노동 인구수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태국 아동노동의 성별구성

	전체 인구					전체 노동력			고용된 노동력		
	총계	13미만	13-14	15-17	18이상	13-14	15-17	18이상	13-14	15-17	18이상
남	30,411	7,049	1,130	17,414	20,490	92	491	17,516	78	399	16,405
여	30,537	6,868	1,097	1,685	20,886	72	367	13,601	63	308	12,156
전체	60,948	13,917	2,227	3,427	41,377	164	859	31,118	141	708	28,562

출처 :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1999, "Child Labour Prevention and Solution in Thailand"에서 재 용합

관광관련 상업 활동, 매춘, 물품판매,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아동노동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광산업에 투여된 매춘 아동들은 대략 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매춘의 경우 최근 NGO와 국제기구-UNICEF와 ILO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매춘에 종사하는 아동들의 AIDS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노동조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태국 아동노동의 성별 차이를 보면 경제위기가 고조되었던 1997년 남아보다는 여아의 노동에 경제위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태국의 아동노동의 성별차이를 생산해내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호황기에는 남아와 여아 모두의 노동이 감소하지만, 여아의 노동이 더욱더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불황기에는 여아의 노동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의 3배 이상의 여아들이 농업분야에서 일을 하며 판매 분야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2) 법적 규제

태국은 ILO 규약을 채택하고, ILO-IPE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이다. 태국 헌법 86조(개정안 B.E. 2540, 1997)에서는 “고용을 증진하고 노동자들 특히 여성과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이들의 건전한 고용관계와 정당한 임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에 입각하여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여성과 아동 등 비특권 계층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기본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족과 공동체, 지방 정부 프로그램 의사결정에 참여를 증진시키고, 인간적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ILO-IPEC 과 노동복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가계획법령(National Plan of Action, 1997-2001)을 통해 아동노동 예방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15세 이하 아동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이들에 대한 노동착취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Law, 1998) 개정안에서는 노동 최소 연령을 13에서 15세로 높이고, 여성과 아동 근로자에 대한 성적 추행을 저지르는 고용주와 검사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태

국의 노동보호법은 주로 제조업 분야의 아동노동에 대한 검사 조치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노동검열의 분야를 소규모 기업과 아동노동 중심의 사업장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노동보호법의 제한 범위 확장은 최근 태국의 아동노동의 영역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소규모 단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착취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태국은 ILO의 ‘최악의 형태의 노동’ 근절을 위한 ILO 회의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국 아동노동 보호 위원회(National Child Labour Protection)가 구성한 아동노동 근절과 예방 소위원회를 통해 태국 내에서의 최악의 아동노동을 구별해내고 그러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본 소위원회는 노예와 같은 노동을 하는 아동노동자, 담보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노동자, 매춘을 통해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노동자, 마약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 아동노동자,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매춘 예방과 금지법령(B.E. 2539), 여성과 아동 불법 매매 예방과 금지 법령(B.E. 2540) 제정으로 연결된다. 본 법령하에서는 아동 매춘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아동매춘을 금지하며, 아동매춘을 검사하는 검사관의 임무, 아동매춘 고발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태국의 아동노동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아동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불법 매매 예방과 금지 법령(B.E. 2540)이 최근에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본 법령하에서는 아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정부가 검열을 실시하고, 아동 불법 매매에 대한 법적인 처리과정 등을 다루고 있는데, 본 법령하에서 아동의 매매가 적발되고 처리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법령은 주로 특정한 영역의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아동노동 전반에 대한 정부 규제 방침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아동노동 예방과 해결 계획이 1997년 실시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계획은 태국 아동노동의 문제를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문제 예방과 해결 방안 수행을 위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또한 본 계획은 ILO가 진행해온 특정 영역(The Worst Form of Child Labour)에 대한 근절 지침을 태국에 적용하여 대상 아동노동자 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예방 프로그램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가 아동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제 지침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태국은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아동노동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서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태국의 아동노동자들은 노동 보호법에 의한 법의 보호만을 받고 있고,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 행위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3) 국제기구의 활동

UNICEF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태국에서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활동의 결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Nitruangjaras et al. 1998). UNICEF는 태국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방향으로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조사 프로젝트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물질적 지원을 비롯한 국

제사회에서 얻으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제적 연대 활동을 자극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태국의 ILO-IPEC은 최근 10년 동안 태국에서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태국의 ILO-IPEC의 실행 방안들은 3가지 활동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조적인 요소(경제, 부모의 인식 등)들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방향. 둘째, 아동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의 활동 방향. 그리고 셋째, 사회적 홍보를 위한 활동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 방향들은 태국 사회의 토착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ILO-IPEC의 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된 것이다.

4) 아동노동 관련 국내외 NGO 활동

Child Workers in Asia(CWA)는 지역 NGO로서 불법이민 아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불법 아동 매매춘을 중심으로 1990년부터 아동노동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매춘 아동 성착취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CWA는 태국 내의 ILO-IPEC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IPEC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참여를 수행하기도 했다(CWA 1992).

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ILO-IPEC 프로그램들에 대한 CWA의 입장은 ILO가 강조하는 아동노동 완전 근절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장에서 아동노동자들을 제거하는 경우 더욱 나쁜 영역으로 유입되어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춘이나 마약 밀매 등을 하게 될 것이므로 아동노동의 완전근절 보다는 아동들의 실제적인 현실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또한 ILO-IPEC의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

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노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성패는 단지 2-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CWA 1999).

태국의 농촌지역 아동노동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Foundation of Rural Youth(FRY)이다. FRY의 주된 활동은 아동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아동들에게 가정 서비스(home service)를 공급하고 이들의 재정적인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조합(credit union)과 같은 기관과 협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FRY도 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ILO-IPEC의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아동들에게 학습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ILO-IPEC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oundation of Child Development(FCD)는 태국 아동노동자들의 보호소(second home)의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감금 노동, 무임금 노동 문제로 시달리는 아동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이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FCD는 매우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직접 하진 않지만 직업을 소개하고 아동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알선해준다.

5) 정부개입

태국의 아동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입 활동을 해온 정부 부처는 노동복지부(Department of Labour and Social Welfare)이다. 1998년에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ILO-IPEC이 추구하는 아동노동의 완전근절 방안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이를 태국에서 적용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노동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국가계획 하에서 노동복지부는 크게 4가지 수준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아동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이다.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 착취 고발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근로감독관, 지방 노동보호 기관 및 복지관과 아동을 돕는 기타 기관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둘째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아동노동자들의 생활 개선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권고하고 이를 직접 검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여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태국의 노동복지부는 아동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수준의 협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복지부는 주로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서 적절한 기관들의 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회의 협약(National Conference Agreement)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동노동자 교육의 커리큘럼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들이 교환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3. 필리핀

1) 아동노동 현황

ILO 통계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는 285만 명의 아동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5-17세의 아동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10-14세의 아동노동 비율은 두 번째로 높다. 다른 아·태 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아동노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필리핀의 남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아동노동자들이 있다. 전체 남아와 여아 노동자 비율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욱더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노동의 영역별 분류 비율을 고찰해보면, 농업영역과 더불어 판매 노동에서도 아동노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2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LO-IPEC 1999). 이중에서 150만 명의 아동이 10-14세의 아동들이다.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은 단기 또는 임시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일주일이나 하루 정도의 노동만을 하는 아동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방학이나 특별 시기에만 노동을 하는 경우도 28퍼센트 이상이나 된다. 아동노동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영역은 국가의 핵심 산업인 농업이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아동들은 주로 농업분야에서 거의 무임금의 조건에 처해있다. 이는 아동 자신들의 가족들이 경영하거나 소유한 농장에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법적 규제

필리핀은 1973년 ILO의 「최소노동연령 규약」을 비준했다. 1997년 필리핀의 최소 노동연령을 15세로 규정한 바 있고, 1992년에 제정된 「아동에 대한 필리핀 행동계획」(Philippine Plan of Action on Children)에 기반 하여 아동노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1999년 의회는 아동과 그들의 가족들과 관련된 범죄 및 민사사례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을 창설하려는 R.A. 8369, “아동과 가족 법원 법령”을 통과시켰다. 또한 의회는 아동학대, 착취, 차별에 대한 특별 보호 법령이라 불리는 필리핀의 공화국 법령 No. 7610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고, ‘아동을

위한 감찰(Ombudsmen for Children)’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R.A. 7610과 7658과 같은 아동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S.B. No. 750을 통해 18세 이하의 아동들의 착취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이 위험한 노동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강제 노동이나 노예, 불법 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 아동노동을 고발하고 이를 처리하는 주체들을 구별하고 있는데, 경찰, 사회복지사, 노동부 등 정부 공무원, 아동보호 기관대표 등이 고발을 할 수 있다.

법령 No. 7610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이다. 본 법령에서는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착취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법령에서는 아동노동에 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Article VIII), 주로 아동노동자를 위해 고용주가 마련해야 하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⁴⁾ 또한 본 법령은 아동노동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법령의 제13항에서는 필리핀 교육부가 초등교육을 끝내지 못한 아동노동자의 지적인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화, 스포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태국과 인도의 경우와는 달리 필리핀의 법령에는 아동노동을 불법적인 사안으로 다루기보다 아동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주 규제 및 정부 지원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필리핀

4) 고용주는 아동고용시 노동고용부 인가가 필수이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며, 아동을 착취하고 차별하는 체계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동들이 일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노동고용부는 위의 모든 조항들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규제를 담당한다.

법령 내에는 아동노동자에 대한 비정규 교육 제도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어 필리핀 정부의 아동노동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3) 국제기구의 활동

UNICEF 보고에 의하면 필리핀은 지역 구분 상 지역 6(Western Visayas) 과 8(Eastern Visayas)의 경우 도서지역으로서 어업에서의 아동노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보며 전체 아동노동의 66퍼센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아동노동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캠페인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UNICEF는 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경우도 직업 소개인(recruiter)의 불법적 활동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UNICEF는 필리핀 아동노동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필리핀 UNICEF는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 받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아동노동 관련 공동 연구 및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UNICEF는 아동들과 관련된 제반 영역 — 사법체계, 노동현장, 언론, NGO, 학교, 종교 공동체, 사회 서비스, 건강과 영양 서비스 등 — 에서 아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학교는 아동의 중요한 정신적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교육과 교육환경개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ILO-IPEC 프로그램은 국가 아동노동 위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국가 아동노동 위원회는 아동노동 프로그램을 위한 조직 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기능을 하고 있다. ILO-IPEC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필리핀 아동노동자 집단은 불법 매매의 희생자, 광산영역의

노동자, 가내(공업) 노동자, 매춘 아동, 심해 잠수 노동자, 어업, 상업 플랜테이션 농업 등이다. IPEC은 필리핀 내의 아동노동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아동노동자조사(National Survey on Working Children: NSO)의 작업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IPEC은 필리핀 정부의 아동노동 관련 정책 입안에 관여했다. 이는 IPEC이 주로 국가법안과 규제에 대해 검토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필리핀 내에서는 최근 36개의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과 19개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절반은 아동노동과 아동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행동 방식의 형태를 취했다.

기업가들의 참여를 주도하는 Employer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ECOP)는 ILO-IPEC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ILO-IPEC이 필리핀 내에서 다양한 활동 주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4) 아동노동 관련 국내외 NGO 활동

Visayan Forum은 주로 18세 이하 필리핀 이주 아동노동자와 가내 노동자, 어업 아동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닐라 외 4개의 지방 지회를 갖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아동노동 관련 NGO이다. 주로 불법 매매의 희생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1990년에 설립되어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Visayan Forum은 GMACL의 참여 단체이기도 하고 지도급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Visayan Forum은 카산바하이 프로그램(Kasanbahay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에게 카운셀링, 사법소송, 교육(장학금)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 단체는 가내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수마피(SUMAPI)라는 아동노동자 조직을

창출하고 현재 8,000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아동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아동의 세력화를 추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isayan Forum은 대중들에게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에 대한 대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Visayan Forum은 ILO-IPEC의 파트너로서 전체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Visayan Forum은 ILO-IPEC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중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적이다.

필리핀 내의 아동노동 관련 NGO들의 활동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Unity of Diversity)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이해와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통합된 구조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한 통일성의 한 예가 1998년 Global March의 세계 운동에 필리핀 NGO들이 대거 참여했고, 이러한 참여를 통한 NGO들 간의 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동노동 근절 국가 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Against Child Labour)을 구성하였다.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he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ECPAT)는 1991년에 창설된 아동노동 관련 필리핀 NGO이다. ECPAT은 매춘의 공급 지역과 수요 지역 중심으로 아동 매춘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리핀의 아동매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ECPAT는 매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들의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아동 스스로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ECPAT의 활동은 전개되고 있다.

5) 정부 개입

필리핀에 있어 아동노동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은 노동부 산하 여성과 청소년 노동국(Women and of Women and Young Wokers)이다. 필리핀 정부는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아동노동 고용에 관한 조치를 필리핀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도나 태국과는 달리 필리핀 정부는 아동노동의 해결 방안을 근절 방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NGO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을 통한 사회인식 제고 프로그램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국가의 통합적인 아동노동 근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주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아동노동 고용주에 대한 법적인 규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국제기구의 아동노동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를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IV. 아태지역 아동노동의 배경 요인

국가별 아동노동 심화의 변수들은 (1) 절대빈곤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취약성으로 크게 분류되는 경제적 요인, (2) 재원 및 인프라의 절대 부족과 물질만능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교육 가치의 상실로 분류되는 교육시스템 차원의 요인 (3)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원 지원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협력의 적극성으로 분류되는 국제적 관심 및 지원의 요인 (4) 정부의 법집행 의지 및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분류되는 국내 제도적 요인 (5) 종교,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와 사회구조의 제문제 등으로 분류되는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다.

1. 경제적 요인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노동의 비율은 개별 국가의 빈곤율과 관계가 있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의 아동노동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인도는 세계 최고의 빈곤율 보유국가로서 전체 인구에서 빈곤계층의 비율은 약 40퍼센트다. 빈곤층의 가계별 하루 소득은 2001년 현재 14루피(328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World Bank, 2002). 가계의 절대빈곤과 아동노동은 매우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들이 투입되는 것이다. 인도의 사례는 절대빈곤의 문제가 아동노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악한 아동노동 조건 역시 이 절대빈곤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아동노동의 유형과 정도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빈곤으로 인해 형성되어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아동들은 낮은 임금 영역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에 투입된 아동들은 인도의 경우 유형 II, 태국과 필리핀은 유형 II와 유형 III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유형 IV의 증가가 예견된다.

태국의 아동노동은 태국의 경제성장과 위기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왔다. NSO(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조사에 의하면 태국의 경제성장이 고조에 이르렀던 1988-1996년에는 아동노동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태국의 아동노동 숫자가 85퍼센트나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로 인해 아동노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의 영역도 비공식 영역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ILO 1998a).

인도의 경우가 경제의 만성적 쇠퇴로 절대빈곤이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노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태국의 경우는 경제성장기나 쇠퇴기 모두 아동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하

는 시기에는 아동노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며, 아동노동의 절대적인 수 역시 증가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쇠퇴하는 경우 아동노동은 공식적 영역에서 밀려나 가내 공업과 같은 비공식 영역에 집중된다.

〈그림 4〉 아태지역 아동노동과 빈곤율, 1998

출처 : World Bank, 2000, World Development Report을 재구성한 것임.

필리핀의 경우는 아동노동이 핵심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의 핵심 산업 영역이 1차 산업인데, 아동노동자의 경우 1차 산업에 집중되어있다. 인도와 태국의 경우는 아동노동이 국가 부의 창출의 근원이라기보다는 정규 성인 노동인력과 동일한 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흡수되는 노동인력이지만 필리핀의 경우는 국가 핵심 산업 영역에 아동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산업구조 상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 교육시스템 차원의 요인

아동노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인이 바로 교육의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의 주된 전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노동이 쉽게 유발되고 아동들의 교육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유형 III, 즉 비공식영역에서의 자발적 노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정부가 교육의 질과 교육 수준을 높일 의무를 헌법 개정안 42조와 헌법 30, 45, 350A조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독립이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Mishra 2000). 최근에 인도 정부는 아동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3천만 명 이상의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도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 아동들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과 장치의 미비와 둘째 교육의 낮은 질 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아동들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수혜를 통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안으로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인도의 의무교육 연령은 14세이지만 12-15세가 최저노동연령으로 설정되어 있어 14세까지 아동들의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인도는 8천 2백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고 15세 이상의 문맹률이 41퍼센트나 된다.⁵⁾

5) 인도의 문맹률은 근접국가인 방글라데시 33퍼센트, 파키스탄의 26퍼센트보다도 높다(World Bank 2000).

태국의 경우는 초등교육법령(Primary Education Act) B.E. 2523(1980)에도 불구하고 6-11의 태국 아동 중 46만 명, 12-15세는 31만 명, 16-19세는 30만 명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 수준별로 아동노동자 비율이 높은 중학교 교육 수준의 학교 등록 비율은 다소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등록을 포기하는 아동들의 비율이 15-17세에는 점차 높아져 76퍼센트에 이른다. 태국 사례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적극개입으로 인하여 초등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들이 중등 교육에까지 연이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됨으로써 초등교육의 비율이 확대되고 중등교육의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필리핀은 인도와는 달리 아동노동자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ational Sourcebook 1999). 그러나 태국과는 달리 필리핀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내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는 부족한 공립학교와 값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학교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 중 50퍼센트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국제적 지원에 대한 협력 부진

2장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노동 감소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로컬 기관과의 협력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적 지원에 대한 협력은 정부의 협력과 국내 NGO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협력의 정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에서 UNICEF의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는 NGO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국의 UNICEF는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NGO에게 협조적인 편이고, NGO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도 하며 최근에는 NGO와 노동복지부가 협조활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NGO 활동에 대해 지원하며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지침에 빠르게 편승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이해 분열을 국가 스스로 통제하고 그러한 지침아래 통합된 구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인도 NGO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노동에 대한 인도정부의 의지와 국제기구의 접근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대부분은 국제기구의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목표인 아동노동의 완전근절 보다는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태국의 NGO 역시 아동노동의 완전 근절이라는 국제기구의 목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내의 다양한 NGO들과 협력하여 아동들이 처해있는 조건의 다양성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필리핀은 국제기구와 다양한 활동의 연계, 국제기구와 국내 NGO가 협력하여 아동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 및 경영에 대한 계획과 훈련을 하며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여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성격은 유형Ⅱ와 Ⅲ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국내 NGO의 협력이 활발한 필리

핀의 경우는 아동노동의 문제가 도시와 지방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제기구의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방에서는 유형 III과 유형 IV의 확대가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4. 사회문화적 요인

인도는 인구의 82퍼센트가 힌두교를 믿는다. 힌두교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인도인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힌두교는 자연적 재앙, 기근, 지진, 전염병 등은 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믿으며, 동일하게 가난, 고용, 질병 등 역시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는다(Pant, 1995). 또한 힌두교는 공공재를 추구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적 공동체의 결속력이 매우 강한 편이다. 힌두교가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지역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와 같은 카펫 산업지역과 델리(Delhi)와 같은 도시지역이다. 카펫 산업지역에 아동노동과 델리(Delhi)를 중심으로 하는 길거리 아동노동이 인도 아동노동의 주된 구성 요소가 된다는 기존 논의에 기반 하여 보면 힌두교적 전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힌두교 원리에서 강조하는 운명론은 경제적 빈곤이 개인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인위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며 가난을 극복하려는 개인적 의지는 무의미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노동자가 바로 이러한 가난에 대한 극복의지가 없는 힌두교 가계로부터 배태되며, 이러한 종교적 원리가 그들 가계를 지배하는 한 아동노동자들은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는 남아와 여아의 노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이하다. 인도에 있어 남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구조하에서 가계의 혈통을 잇고, 가업을 잇는 주체이며,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여

〈표 4〉 아태지역 아동노동의 배경요인

경제	절대 빈곤의 경제상황	인도 ★★★★★ 태국 ★★ 필리핀 ★★★
	노동시장의 취약성	인도 ★★★★★ 태국 ★★★ 필리핀 ★★★
교육시스템 차원	재원 및 인프라 부족	인도 ★★★★★ 태국 ★★ 필리핀 ★★★
	교육에 대한 가치의 결여	인도 ★★★★★ 태국 ★ 필리핀 ★★★
국제적 관심 및 지원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원 지원	인도 ★ 태국 ★ 필리핀 ★
	국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협력	인도 ★★★★★ 태국 ★ 필리핀 ★★
국내 제도	정부의 법집행 의지결여	인도 ★★★★★ 태국 ★★ 필리핀 ★★
	시민집단의 활동 미흡	인도 ★★★★★ 태국 ★★★ 필리핀 ★
사회문화	종교,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	인도 ★★★★★ 태국 ★★★★★ 필리핀 ★★★
	사회 구조적 제 문제	인도 ★★★★★ 태국 ★★ 필리핀 ★★★★★

아의 경우는 가계의 재산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한 범주로 인정해왔다(Pant 1995). 여아의 경우는 바로 가내의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 존재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력이 가계의 가치 생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남아의 노동은 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아의 노동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은 전통적인 불교원리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최근 태국 사회 진행되고 있는 물질주의와 같은 근대화 또는 산업화로 형성된 가치가 이러한 종교적 가치를 대체하고 있다. 예컨대 매춘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관광산업 영역에 투입되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춘 아동들

에게 있어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매춘 아동노동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물질만능주의가 매춘 아동에 있어 중요한 노동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Baker, 1999).

태국 아동노동의 유발 원인을 논의함에 있어 왜곡된 유교적 가치인 소위 *Todtan Bunkhun*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Todtan Bunkhun*은 아동을 낳아준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동노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와는 달리 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전통적 가치로서 *Todtan Bunkhun*은 부모의 빈곤이 심각한 경우 부모가 아동들에게 경제적 보답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Berger and Glind 1999; Hays 1994).

태국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동노동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사회인식이 경제발전과 소비주의의 만연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의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아는 교육, 여아는 노동이라는 양분된 인식은 소비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남아와 여아 노동 모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에 있어 가톨릭은 아동노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 식민통치 시절 스페인 신부들은 필리핀 아동들에게 교회나 예배당을 청소하도록 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들의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Rosario et al. 2000). 미국 점령기에는 필리핀 아동노동자들이 점차 체계적인 고용구조 내로 침투하기 시작하여 아동들은 주로 공장, 농업, 서비스 영역에서 노동자로 고용되었고, 이때부터 아동들이 매매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필리핀 아동들은 식민지 정책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의 영역으로 투입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아동노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필리핀 역시 인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노동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남아와 여아의 노동범위가 다르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고, 여아는 어머니의 일을 이어받아 노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osario et al. 2000). 그러나 태국과는 달리 남아의 교육, 여아는 노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필리핀의 사회적 인식 내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태 지역의 전통적, 현대적 사회인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인도, 태국, 필리핀의 경우 지역 내 선진국들과는 달리 공통적으로 아동노동이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개별 국가 내부 사회적 인식이 차이는 남아나 여아 모두의 아동노동을 인정하느냐 혹은 전통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의 노동이 더욱더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개 국가의 이러한 사회 문화적 가치의 특징은 유형 III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5〉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노동과 관련된 사회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가족 구조 및 규모이다. 아·태지역 국가에는 대부분 전통적인 가족 구성 방식과 근대화 이후 가족 구성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즉 대가족 규모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 방식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가족의 수는 가용한 노동력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거대한 가족 단위의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서구 근대화의 영향으로 핵가족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가족 구조는 아동노동의 배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구조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의 노동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농촌지역의 가족들은 대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을 자녀들로 충원하는 경우가 높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가능성이 낮고, 학비에 대한 부모의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다.

비교적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도시의 경우는 부모의 무관심에 의해 가족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내버려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부모 아동들이 증가하여 가족의 무관심 속에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ILO 2000).

인도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농촌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경우와 편부모 아동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 및 특성이 아동들로 하여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보통 2-23인 정도의 가족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리핀 역시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와 핵가족, 편부모 가족구조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인도와 필리핀의 사례에 있어서는 편부모 가족의 아동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지를 부모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osario et al. 2000).

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아동들이 농촌지역에서 이주하여 도시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태국의 농촌 역시 대가족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아동이 가내농사일을 돕거나 도시에서 노동을 하여 부모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 지역의 부모들은 부양 자녀수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고, 교육비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이유로 아동들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가계의 생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노동조건과는 상관없이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동노동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한 사회적 구조의 또 다른 문제는 아동을 노동시장에 불법으로 공급하는 중개인의 존재이다. 인도에서는 아동노동을 중개하는 불법기관의 활동은 농촌 중에서도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값싸고, 가난하며, 문맹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아동을 매매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UNICEF는 필리핀의 경우도 중개인의 불법적 활동을 근절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각 국가별로 아동노동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도의 경우는 경제, 교육시스템 차원, 국내제도 와 사회문화적 요인 중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태국은 다른 요인보다도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나타냈고, 필리핀 역시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된 인도, 태국, 필리핀 등 3개 연구 대상국가의 아동노동 발생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과 이로 인한 교육시스템 차원의 문제는 결국 개별 국가의 재정여건 및 경제발전의 정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도 노동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에 부응하는 개별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협력과 가치체계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 및 대응방안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론의 아동노동 유형 분류상 I과 III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개별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아동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이하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의 경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3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아래의 비교분석을 위한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3개국의 요인을 비교한 결과 경제, 교육인프라, 국제적 지원에 부응한 정부의 정책협력, 국가 내부의 제도적 기반 및 집행의지, 사회문화적 가치 등의 차원에서 가장 상태가 심각한 국가는 인도이다. 절대빈곤의 경제 환경 하에서 인도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심각하다. 전통적 계급사회의 영향으로 종교, 사회 및 가족사회의 왜곡된 가치가 존재하여 아동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교육재정이 국방비 등 여타 경쟁예산 부분에 비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정부의

관련법 집행의지가 취약하고 국제기구의 지속적이고 광폭적인 정책 및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력의지가 상대적으로 결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집단의 활동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국제 NGO와의 시각차이로 인해 전반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는 경제적 상황의 호전과 시민사회의 성숙도 차원에서 인도보다는 훨씬 개선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중장기적인 지원에 부응하는 정부의 협력의지가 강한 편이며, 이러한 의지는 법제도의 확립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본교육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발현하면서 여전히 아동노동에 대한 가족 내부의 인식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은 오랜 서구 제국의 식민경험으로 인해 비교적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높다는 점이 시민집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필리핀 시민집단들은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개발 및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역시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아동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3개국의 경우 아동노동의 근절을 위한 여건의 형성에 있어서 경제상황의 호전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며, 시민사회의 가치변화와 이의 제도적 반영이 전제되어야 하고, 국가인적 자원의 경쟁력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정부의 인식과 제도적 개선, 그리고 기존 관련법의 적극적 집행 및 관리가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국가별 요인 분석

인도	경제	절대 빈곤의 경제상황	★★★★★
		노동시장의 취약성	★★★★★
	교육시스템 차원	재원 및 인프라 부족	★★★★★
		교육에 대한 가치의 결여	★★★★★
	국제적 관심 및 지원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원 지원	★
		국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협력	★★★★★
국내 제도	정부의 법집행 의지결여	★★★★★	
사회문화	시민집단의 활동 미흡	★★★★★	
	종교,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	★★★★★	
태국	경제	절대 빈곤의 경제상황	★★
		노동시장의 취약성	★★★
	교육시스템 차원	재원 및 인프라 부족	★★
		교육에 대한 가치의 결여	★
	국제적 관심 및 지원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원 지원	★
		국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협력	★
국내 제도	정부의 법집행 의지결여	★★	
사회문화	시민집단의 활동 미흡	★★★	
	종교,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	★★★★	
필리핀	경제	절대 빈곤의 경제상황	★★★
		노동시장의 취약성	★★★
	교육시스템 차원	재원 및 인프라 부족	★★★
		교육에 대한 가치의 결여	★★★
	국제적 관심 및 지원	국제기구의 정책 및 재원 지원	★
		국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협력	★★
국내 제도	정부의 법집행 의지결여	★★	
사회문화	시민집단의 활동 미흡	★	
	종교, 사회 및 가족의 편협된 가치	★★★	
		사회 구조적 제 문제	★★★★★

참고문헌

- Bachman, S. L.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Child Labor and its impacts on International Business." <<http://www.findarticles.com>>
- Baker, S. 1999. "Working children and the Thai economic crisis." vol. 1999: <http://www.cwa.tnet.co.th/booklet/thailand.htm>.
- Barker, G. and F. Knaul. 1991. "Exploited Entrepreneurs Street and Working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1. New York: UNICEF.
- Berger, Herve and Hans van de Glind. 1999. *Children in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Illicit Activities: Thailand, Magnitude of Problems and Remedies. Bangkok.*
- Boyden, J. 1991. "Working Children in Lima, Peru." In W.E. Myers, ed. Protecting Working Children. London: Zed Books Ltd in association with UNICEF.
- Collins, J.L. 1983. "Fertility Determinants in a High Andes Commun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1: 61-75.
- CWA. 1992. *Child Workers in Hazardous Work in Thailand.*
- CWA. 1999. *Quick Money Easy Money : A Report on Child Labour in Tourism.*
- Grootaert, Christiaan and Ravi Kanbur. 1995. *Child Labor: A Review.* World Bank'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454.
- Hays, Ellen. 1994. *Reducing Girl's Vulnerability to HIVs/AIDs: The Thai Approach.* UNAIDS Case Study.
- ILO. 1996. "Calls for Immediate Action Against Intolerable Forms of Child Labor." <<http://www.ilo.org>>

- ILO. 1998a. *Thailand Country Study Towards a Best Practice Guide on Sustainable Action Against Child Labour.*
- ILO. 1998b. *The Situation of Child Labour in Thailand : A Comprehensive Report.*
- ILO. 2000. "Richard Anker, Conceptual and research frameworks for the economics of child labour and its elimination." ILO/IPEC Working Paper.
- ILO-IPEC. 1998a. *A Survey Research on Appropriate Education For Children Of Construction Worker.*
- ILO-IPEC. 1998b. *For Children Who Toil ; A Report on Sustainable Action against Child Labour in the Philippines.*
- ILO-IPEC. 1999. *Intergrat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to Mainstream Vocation Training ; A Practical Guide.*
- ILO-IPEC. 2000. *Moving ahead toward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Background paper for discussing at the Asian Regional Meeting on the worst Form of Child Labour.*
- ILO-IPEC. 2001. *IPEC Action Programme under Country Program Management: Biennium 2000-2001.*
- Kannan, Ramya. 2001. *Child Labor in India.* Global March Working Paper.
-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Thailand. 1999. *Child Labor Prevention and Solution in Thailand.*
- Mishra, K. Sept. 2000. *Overview of Decentralization in India.* Background Paper Series Vol.III. World Bank.
- Nitiruangjaras, K., Predkitti, B. and Tantisearenee, P. 1998. *Research on child labour in fishery industry and related industry in Pattanee province.* Pattanee: Family Planning Association.

- NSO. Philippines. 1995. *National Survey on Working Children*.
- National Source Book*. 1999. The Philippines Government.
- Pant, Niranjana. 1995. *Status of Girl Child and Women in India*. Delhi: Ashish Publishing House.
- Rosario, Del and Bonga. 2000. *National Policy Study on Child Labor and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ILO and PIDS Inception Report*. Manila.
- Siddigi & Patrinos Harry Anthory. "Child Labor: Issues, Causes, and Interventions." <<http://www.worldbank.org>>
- Saunders, Penelope. 1998. *Worst Form of Child Labor*. Global March Working Paper.
- UNICEF. 2001. *Children in Need of Special Protection: East Asia and the Pacific*.
- V. V. Giri. National Institute. 1998. *Child Labour in India: An Overview*.
- V. V. Giri. National Institute. 2000. *Media Response to Child Labour : A Review of Press Clippings*,
- World Bank Group. 1999. "Child Labor : Issues and Direction for the World Bank." <<http://wbln0018.worldbank.org>>
- World Bank Group. 2000. *World Development Report*.
-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 2000.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untry-wise Data November 20Th*.

Abstract

Background Factors of Child Labor in Asia-Pacific Region : Ind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Dong-Ju Choi

(G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the situation and background factors of child labor issues in Asia-pacific region. The cases has been focused onto the cause-effect analysis of child labor issues in Ind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The situat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but they share many of common causes of the aspects. These include diminished situation in basic education, disharmony betwee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ocal and international NGOs. Various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countries culminate into relative contrary in their social value and economic institutions, including social norms and economy-relevant social rules.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limination of child labor issue of those countries is government's willingness in every sector of backgrounds, education, legality, public campaign, and coordinative scheme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국문초록

아동노동의 심각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져 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교육 수준과 인프라의 구축 정도,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그 유형이나 발생 배경이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인도, 태국, 필리핀의 경우에도 국가간 아동노동의 발생원인과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의 차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비교분석의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노동의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설정한 세 가지 국가 사례를 현황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개별 국가의 활동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노동의 근절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의 시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3장 현황에 근거하여 아동노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 및 노동조건의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변수들이 근절방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된 인도, 태국, 필리핀 등 3개 연구 대상국가의 아동노동 발생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과 이로 인한 교육시스템 차원의 문제는 결국 개별 국가의 재정여건 및 경제발전의 정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도 노동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에 부응하는 개별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협력과 가치체계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 및 대응방안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론의 아동노동 유형 분류상 I과 III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개별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아동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이하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의 경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